

2 都市計画法施行令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31號

1. 주요내용 및 취지

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폐차장·자동차운전학원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광역시설의 종류를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되는 시설과 2이상의 시·군이 공동사용하는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정함.

1.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되는 시설 : 도로·광장·철도·하천·운하·공원·수도·공동구·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열공급설비·통신시설 등

2. 2이상의 시·군이 공동 이용할 시설 또는 다른 행정구역에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운동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유통업무설비·하수도중종말처리장·수질오염방지시설·유수지 시설 등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공공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무상 귀속 및 양도할 시설을 명확히 함.

1. 광 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 도

4. 하 천

5. 운 하

6. 항 만

7. 공 항

8. 녹 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 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저수지

15. 방풍설비

16. 방수설비

17. 방화설비

18. 사방설비

19. 방조설비

20. 우수지시설

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에서 1개월 이상 50톤 이상의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나 10개 이상의 콘테이너용기를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규제행정을 최소화함.

마. 토지형질변경등 행위 허가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하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다음 사항으로 하여 인근지역의 피해보상이 이행되도록 함.

1. 10미터 이하로 토지를 굴착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나 인근 토지의 균열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10만입방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발파 등으로 인근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토석운반차량의 진입으로 진입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이행보증금의 금액 산정 및 예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마항에 규정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피해예상액 및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비용과 조경비로 한다.

2.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허가관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가 허가신청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사.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함.

도시계획법상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등 6개구역의 지정과 광역 및 상세계획,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국가 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권한 이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아. 도시계획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도시재정비계획)
2.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중 광역시설
4.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연차별집행계획 수립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도시계획시설(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차. 지역·지구의 세분 및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반주거지역을 1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상업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을 신설함.
2. 위락지구 및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시설보호지구를 학교·공용·항만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함.

카.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을 정함.

1. 지정대상 :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시가지조성사업구역, 역세권개발사업지역

2. 대상시설 : 도로·주차장·광장·공원·공공공지·수도·공동구·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통신시설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정함.

파. 공동구를 설치할 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함.

하.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조성사업의 면적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10만㎡ 이하
2. 시가지조성사업 : 30만㎡ 이하
3.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30만㎡ 이하

2. 의견제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